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648호·제18732호, 2022. 6. 29.,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절차 및 확인사항 등

-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시 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사유, 제공 방식(도면 포함), 방송구역,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판단하여 수리여부 결정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시청자권익보호 관련 구체적 방안,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기술발전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 부합 여부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 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유선방송국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 법 제93조의3에 따른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 방송, 지역채널 제작지원,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재난방송, 선거 관련 대담·토론회, S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시청자 방송 접근성 제고, IPTV와의 공동협력,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 법에서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 도면을 포함한다)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

2.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 서비스가 기술 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또는 변경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14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6의 제목 “(약관 변경의 통지)”를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해당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자료의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으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요금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의 요건과 법 제77조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6제5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으로, “약관을 변경한”을 “이용약관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를 각각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6까지로 하고,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이용자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광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개선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 항목, 평가일정 등 중요한 사항을 미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품질평가의 방법·절차, 자료제공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의3 앞에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을 삭제한다.

제65조의4 앞에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을 삽입한다.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6까지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① 법 제92조의3에 따른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사항
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등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2조의 3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사항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이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공정

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를 “재허가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를 “재허가검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u>승인 및 재승인</u>) ①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u>승인 · 재승인 신청서에</u>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u>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u>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u>신고 등</u>) ① 법 제9조의3 제1항 <u>전단의 규정에 따라</u>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 도면을 포함한다)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u>승인 ·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u> 과학기술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과

현행	개정안
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u>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u>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술결합서비스 방식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시청자 권익 보호의 적절성 8. 그 밖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 여부를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u>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1. <u>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u> 2. <u>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u> 3. <u>제공하려는 기술결합 서비스가 기술 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현행	개정안
<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u>또는 변경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14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u>
제60조의6(약관 변경의 통지) 유 <u>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u>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변경 <u>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변경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해당 사업자와 시</u>

현행	개정안
<u>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u>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u>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자료의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

현행	개정안
	<u>으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요금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의 요건과 법 제77조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현행	개정안
	<u>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u>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① (생략) ② <u>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u>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가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 ④ 삭제 ⑤ (생략) ⑥ <u>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u> 1. <u>이용자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u> 2. <u>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광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개선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자료에 한

현행	개정안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 항목, 평가일정 등 중요한 사항을 미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

현행	개정안
	<u>신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 <u>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품질평가의 방법·절차, 자료제공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u>
<신설>	<u>제66조의2(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① 법 제92조의3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사항</u> <u>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u> <u>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사항</u> <u>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등에 관한 사항</u> <u>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2조의 3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사항</u> <u>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u> <u>7.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u>8.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u>

현행	개정안
	<u>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이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u> <u>9. 그 밖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79조제2항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	2. 법 제79조제2항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

현행	개정안																						
송사업자에 대한 <u>준공검사 및 재허가 검사</u>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u>준공검사 및 재허가 검사</u>에 관한 사항	송사업자에 대한 <u>재허가 검사</u>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u>재허가 검사</u>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시행령 별표 3(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11. 법 제7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준공검사 신청</td><td></td></tr> <tr> <td>-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td><td>40만원</td></tr> <tr> <td>·설치 : 기본수수료(4채널까지)</td><td>30만원</td></tr> <tr> <td>·변경 : 기본수수료(4채널까지)</td><td>5만원</td></tr> <tr> <td>※ 추가수수료(1채널 추가시)</td><td></td></tr> <tr> <td>-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td><td>7만원</td></tr> <tr> <td>·설치 : 기본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기준)</td><td>5만원</td></tr> <tr> <td>·변경 : 기본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기준)</td><td>2만5천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11. 법 제7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준공검사 신청		-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	40만원	·설치 : 기본수수료(4채널까지)	30만원	·변경 : 기본수수료(4채널까지)	5만원	※ 추가수수료(1채널 추가시)		-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	7만원	·설치 : 기본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기준)	5만원	·변경 : 기본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기준)	2만5천원	□ 방송법 시행령 별표 3(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삭 제></td><td></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삭 제>	
구분	금액																						
11. 법 제7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준공검사 신청																							
-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	40만원																						
·설치 : 기본수수료(4채널까지)	30만원																						
·변경 : 기본수수료(4채널까지)	5만원																						
※ 추가수수료(1채널 추가시)																							
-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	7만원																						
·설치 : 기본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기준)	5만원																						
·변경 : 기본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기준)	2만5천원																						
구분	금액																						
<삭 제>																							

현행			개정안		
※ 추가수수료(인입단자 1,000개 추가시)					
□ 방송법 시행령 별표 4			□ 방송법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신 설>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	500	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	500
나.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500	다.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3	500
버.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	500	서.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 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	500
1)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1)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1,500	2)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1,500
서.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500	어. 법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500
허. 법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를 위반하여 준공	법 제108조제	1,000	고.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	1,000

현행			개정안		
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항제15호			1항제15호	
도.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9호	500	로.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9호	500
<신 설>		300	두. 법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 방송법 시행령 별표 5			□ 방송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 제5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09조제2항	1,000	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법 제109조제2항	1,000